

#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

일과 삶의 균형! 1,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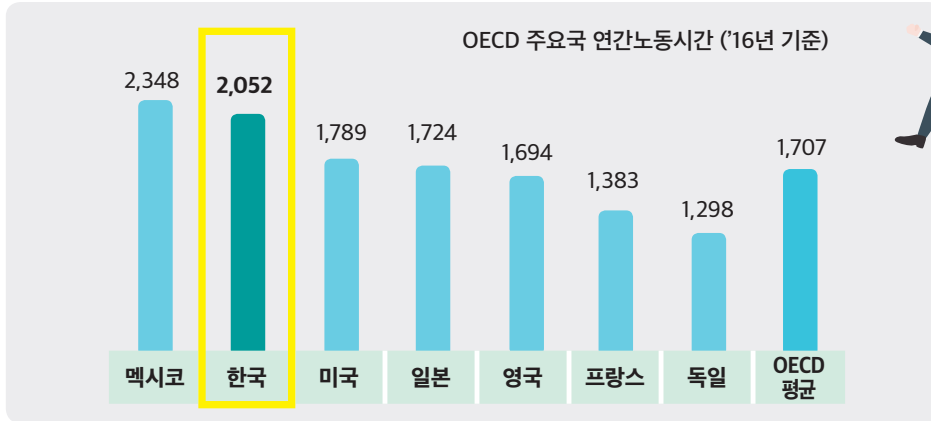


# 노동시간 단축, 왜 필요할까요?



장시간 노동, 지금 우리는...

◆ 연간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로 노동자의 건강권·휴식권 훼손, 삶의 질 저하,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



◆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

◆ 26개에 이르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495만명 근무 중  
노동시간 특례업종  
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



노동시간 단축,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장시간 노동 개선

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, 일자리 창출, 국가경쟁력 강화

##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

### 노동생산성 상승

◆ 주당 노동시간 1% 감소 시  
시간당 노동생산성 0.79% 상승  
('17년, 예산정책처)

\*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 
1인당 노동생산성 1.5% 상승  
('17년, KDI)



### 일자리 창출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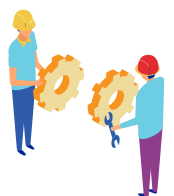
◆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 
13만 7천명~17만 8천명 예상  
('17년, 노동연구원)



### 산업재해 감소

◆ 노동시간 1% 감소 시  
재해율 3.7% 감소

\* 제조업은 노동시간 1% 감소 시  
재해율 5.3% 감소('05년, 산업  
안전보건연구원)



# 300인 이상 기업, 특례제외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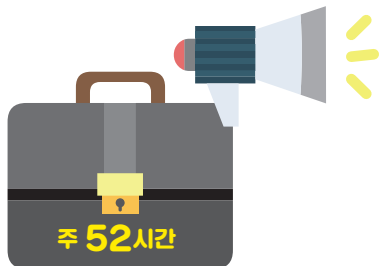
## 1 노동시간 단축

노동시간,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

◆ 휴일·연장근로 포함, 최대 52시간



◆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



### 시행시기

◆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

300인 이상 '18.7.1.

\* 21개 특례제외업종 '19.7.1.

50 ~ 300인 미만 '20.1.1.

5 ~ 50인 미만 '21.7.1.



##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

30인 미만 사업장,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 
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 
(노사 서면합의 시)



### 인정기간

'21.7.1. ~ '22.12.31.

##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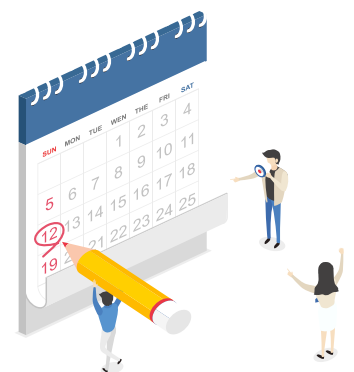
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

8시간  
이내 통상임금의  
100분의 50

8시간  
초과 통상임금의  
100분의 100

### 시행시기

'18.3.20.



## 4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

\* 노동시간 특례업종 :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

### ◆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

26개



5개

시행시기

'18.7.1.(주 최대 68시간 적용)

\* 주 최대 52시간은 '19.7.1.부터  
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



특례유지  
총 5개

① 육상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

\*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

특례제외  
총 21개

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 
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 
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 
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  
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

### ◆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

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 
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 
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

시행시기

'18.9.1.



##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

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 
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

시행시기

300인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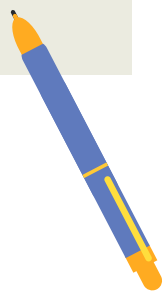
'20.1.1.

30 ~ 300인 미만

'21.1.1.

5 ~ 30인 미만

'22.1.1.



##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

### ◆ 1주 노동시간 단축

40  
시간



35  
시간

### ◆ 1주 연장노동시간 축소

6  
시간



5  
시간

시행시기

'18.7.1.



노동시간을 줄이는  
기업에 대해  
정부가 지원합니다

2018년 7월 1일 부터

300인 이상

주 최대 68시간 → 52시간

특례제외업종

무제한 → 주 최대 68시간



#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

##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

##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·개편



### ◆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

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 
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

신규  
채용

증가노동자 수 1명당  
1~2년간 월 40~80만원 지원

임금  
보전

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 
기존 재직자 1인당 1~2년간  
월 10~40만원 지원  
(임금보전 비용의 80% 한도)



300인 이상 기업

### ◆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

- \*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
- \*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

신규채용  
인건비  
지원

월 40만원, 1년



월 60만원, 1년

임금  
감소액  
보전

500인 이하 제조업, 2년



500인 이하 제조업  
+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, 2년

\*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

##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

- ◆ 기업의 신규채용 시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(70%)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추가로 받도록 現 제도와 연계



##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



### 청년추가고용장려금

중소·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기적으로 신규채용 시 연봉의 1/3 수준(900만원)을 3년간 지원(2,700만원)

- ◆ 30인 미만 : 1명 고용 시~
- ◆ 30~100인 미만 : 2명 시~
- ◆ 100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: 3명 고용 시~

###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

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고용 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

- ◆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: 월 60만원
- ◆ 대규모기업 : 월 30만원

###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
기업에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

- ◆ 우선지원 대상기업 : 월 80만원
- ◆ 중견기업 : 월 40만원

### 청년고용증대세제

청년 1명 신규고용 시 세금감면 기간 연장

\*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

- ◆ 중소·중견기업 : 3년, 연 450~1,600만원
- ◆ 대기업 : 2년, 연 300~800만원  
(현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추진 중)



## 고용창출지원금 추가 지원 예시

※ 고용창출지원금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

### 청년추가고용 장려금

청년 1명 고용 시 최대 **7,690만원** 지원 (3년간 합산 금액)

- 일자리 함께하기 : 3,600만원(1명 × 100만원 × 36개월)
- 청년추가고용장려금 : 1,890만원(900만원 × 1명 × 36개월 × 70%)
- 고용증대세제 : 2,200만원(1,100만원 × 1명 × 2년)

※ 청년고용증대세제 입법 추진 중이며, 도입 시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

### 신증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
신증년 1명 고용 시 최대 **5,812만원** 지원 (3년간 합산 금액)

- 일자리 함께하기 : 3,600만원(1명 × 100만원 × 36개월)
- 신증년 적합직무 : 672만원(80만원 × 1명 × 12개월 × 70%)
- 고용증대세제 : 1,540만원(770만원 × 1명 × 2년)

###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

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 고용 시 최대 **5,644만원** 지원 (3년간 합산 금액)

- 일자리 함께하기 : 3,600만원(1명 × 100만원 × 36개월)
-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: 504만원(60만원 × 1명 × 12개월 × 70%)
- 고용증대세제 : 1,540만원(770만원 × 1명 × 2년)



##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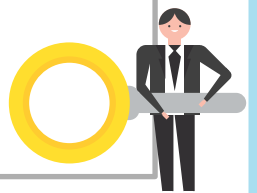
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 
퇴직급여액 감소 예상 시
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

-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 개정  
(’18년 6월)



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  
연금제도(DB) 도입 사업장의  
퇴직급여 손실 방지 위해  
별도 산정기준 마련





#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



## 1 생산성 향상 지원

###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



- ◆ 장시간 노동 개선  
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 
\* '18년 200곳 → 650곳

- ◆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 
특례제외업종 중심으로  
업종별 표준모델 개발

###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



- ◆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 
(K-앱시스트) 참여기업 선정 시  
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
- ◆ 공정·품질 기술개발 사업\*  
참여기업 선정 시  
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 
가점부여 등 우대('19.上~)  
\* 최대 5천만원 지원  
(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)

###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



- ◆ 스마트공장 구축, 생산성 향상  
컨설팅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 
기업에 우선 지원(~'22년, 1.5만곳)
- ◆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 
지원('18년 59억원)
- ◆ 스마트공장 운영·설계 인력양성 확대  
\* 스마트공장 석·박사과정 확대  
('17년 3개 대학 → '18년 4개 대학)  
\*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,  
약 2,200여명 양성('18년)

## 2 일하는 방식 개선

###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



- ◆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 
\* '18년 6,500곳 → 8,000곳
- ◆ 노동시간 준수 관련 교육규모 확대(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)  
\* '18년 4,000명 → 9,000명

##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

근무혁신(노동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)  
실천기업에 대한  
인센티브\* 부여제도 도입('19년~)

\* (예시) 세제지원, 근로감독 면제,  
컨설팅 우선 지원 등 행·재정적 지원



## 4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

### 간접노무비 지원

- \* 유연근무 활용 1인당  
주 5~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
- \*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·배포



# 필요한 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



## 1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

###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

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'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'\*  
으로 선정, 구인관련 애로사항\*\* 해소

\* 중점관리기업 : '17.12월말 기준 15,570개 기업  
→ '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심 선정

\*\* 예)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 
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의  
집단 동행면접 지원



###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

온라인

워크넷에서 구직자에게  
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 
일자리정보 우선 제공



오프  
라인

장시간 노동업종 사업장 밀집지역에  
'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' 확대·운영  
→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

## 2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

###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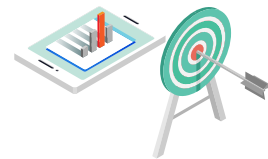
내일배움카드 >

1234 5678 9012 1234  
0920  
CARD

노동자의 역량개발 강화 위해  
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

\* (예시)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 
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

###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



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 
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

###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



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  
→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

\* ~'22년까지, 약 5만명

#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



##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

###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



###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

실태조사('18.6월~), 노사·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 
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


## 유연근로시간 제도 유형

### 탄력적 근로시간제

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 연장,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 단축  
→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(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)



예시

- ◆ 2주 이내 단위  
(1주) 60시간 : 48시간 + 12시간  
(2주) 44시간 : 32시간 + 12시간
- ◆ 3월 이내 단위  
최대 64시간 : 52시간 + 12시간  
\* 3개월 평균 주 평균 52시간

\* 주 52시간 법정시행일 전에는 휴일근로 최대 16시간 추가 가능

### 선택적 근로시간제

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 
정하고 각일, 각주의 노동시간과 출퇴근  
시각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

- ◆ 자율출퇴근제, 시차출퇴근제 등과 유사하나, 일일 노동시간 조정 등을 더 유연하게 활용



### 재량 근로시간제

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 
업무(시행령에서 규정)에 한해 노사가  
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

- ◆ 신상품·신기술 연구개발
- ◆ 인문·자연과학 연구
- ◆ 정보시스템 설계·분석 등



주 최대 52시간으로  
노동시간을  
시행일보다 먼저 줄이면  
우대 지원하겠습니다

법정시행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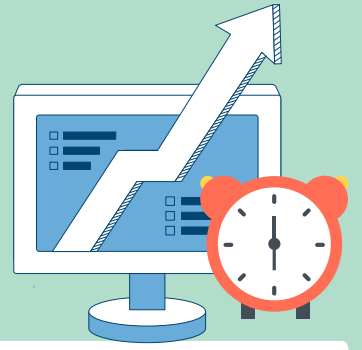
300인 이상 기업 '18.7.1.

\* 21개 특례제외업종 '19.7.1.

50~299인 기업 '20.1.1.

5~49인 기업 '21.7.1.





##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

◆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법정시행일보다 **6개월 이상 먼저 단축 시 지원금액·기간 확대**

\*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이 주 52시간으로 조기단축 할 경우에도 적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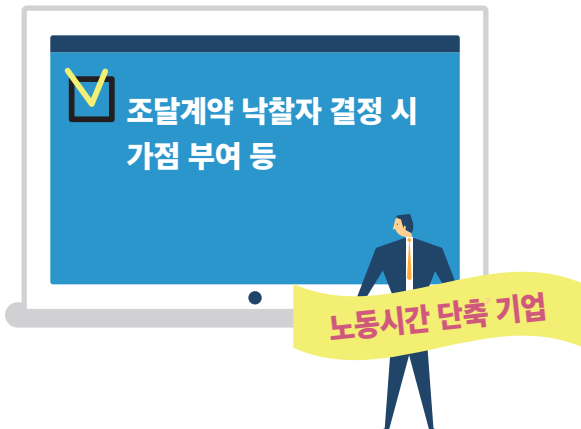
\*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, 1년까지 지원

\*\* 법 시행일이 49인 이하 기업은 '21.7.1.이므로 '18.7.1.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

\*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

## 2 공공조달 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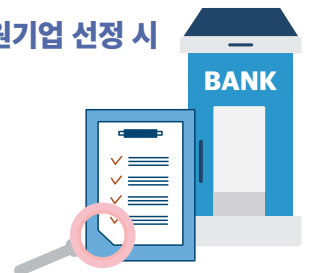


## 3 정책자금 우선 지원

◆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

\* 금리·용자 한도 등 우대

◆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



## 4 설비투자비 용자 우선 지원

### ◆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\*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

\*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/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,  
3년 거치 5년 균등상환, 이율: 1~2%

### ◆ 제조업 공정혁신 등의 소요 자금을 우선 용자

\* '18년 3,300억원, 시설자금 70억원,  
운전자금 10억원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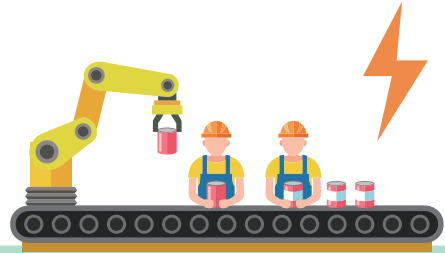


## 5 산재보험료 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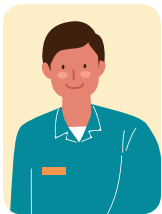
###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에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

###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% 경감

\* 현행 : 위험성평가 인정 20%, 사업주교육 인정 10% 할인



## 6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



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시  
가점 부여 등



## 7 포상 우대

### 각종 선정·심사 시 가점 부여 등

◆ 「대한민국 일자리  
으뜸기업」 선정,

◆ 「가족친화기업」  
인증 심사 등



참고

주요 업종별 지원

1 노선버스업

- ◆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지도
- ◆ 운수종사자 양성·공급방안 마련
  - 운전자 양성사업, 군 운전경력자 활용, 채용설명회 등
- ◆ 노·사·정 논의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 마련('19년)



2 건설업

- 공공공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,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기간 조정 등 지침 마련
-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해외공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, 신규 수주현장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 활용 안내



3 사회복지서비스업

- ◆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
- ◆ 고위험 최종종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방안 추진
- ◆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방안 검토



4 ICT서비스·SW업

- ◆ 적정기간 산정 등 발주문화 개선 위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개정('18.4.26~ 입법예고)
- ◆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, 300인 미만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제공



5 콘텐츠·방송산업

- 콘텐츠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적용 가이드라인,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
- 방송업 「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」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 포함



6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

- ◆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,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
- ◆ 지자체·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·감독\*
  - \* 교대인력 증원 지도,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등

